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8. 13 선고 2021가합100628(본소), 2021가합100635(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대여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중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아라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44,398,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70,970,3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4,398,0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개명 전 C)는 2013년 이전 피고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2013. 3.경부터 원고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대여받는 등 금전거래가 시작되었다.

나. 피고의 금원 지급, 공정증서 등 작성 및 원고의 변제 내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1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262,508,600원을 원고가 지정한 사람이나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인증서와

차용증서(이하 각 ‘작성일자별 공정증서’, ‘이 사건 인증서’라 하고, 각 작성일자별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 2014. 10. 10.자 각 현금차용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순번	대여일 또는 양도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원금 (원)	이자 (%)	변제기
		작성일	증서번호			
1	2013.3.1.	2013.3.11.	증서 2013년제135호 (공정증서)	1억	연30	2016.3.1.
2	2013.3.10.	2013.12.4.	증서 2013년제631호 (공정증서)	5억	연30	2015.3.10.
3	2013.3.10.	2013.3.11.	증서 2013년제136호 (공정증서)	1억	연30	2015.3.10.
4	2013.3.10.	2013.12.4.	등부 2013년제1901호 (인증서)	[채권및시설권리양도양수각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을 2013.11.30.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권리 및 허가일체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함.		
순 번	차용일 및 작성일		문서명	원금 (원)	이자 (%)	변제기
5	2013. 3. 20.		차용금증서	1억	공란	공란
6	2013. 3. 25.		차용금증서	1억	공란	공란
7	2014. 10. 10.		현금차용증서	5,700만	공란	2015. 10. 10.
8	2014. 10. 10.		현금차용증서	5,250만	공란	2016. 10. 10.
9	2014. 10. 10.		현금차용증서	6,500만	공란	2017. 10. 10.
10	2014. 10. 10.		현금차용증서	5,000만	공란	2018. 10. 10.

3)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30.부터 2019. 4. 29.까지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444,622,108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4. 10. 10. 이후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한 피고의 지출 등

1) 피고는 2014. 11. 6. 및 2015. 1. 26. 이 사건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보이는 G에게 680,000원, 2014. 10. 30., 같은 해 11. 30. 및 2015. 11. 5. 성명불상 종업원의 급여수령계좌로 보이는 H의

계좌로 10,800,000원, 2014. 10. 11. 종업원 I의 계좌로 3,000,000원, 종업원 J의 계좌로 2014. 10. 20. 1,4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4. 10. 29.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인 K에게 16,760,000원, 2014. 10. 31.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전기요금 5,823,140원, 2015. 11. 8. 이 사건 유흥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는 L회사에 345,000원을 각 대납하고, 2015. 11. 20. 원고의 채권자 M에게 원고의 채무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피고는 당초부터 원고가 지급했어야 할 원고 거주 숙소의 임대인 N에게 2013. 12. 13.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16,7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허가권 등록절차이행청구소송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나.항 기재 표 순번 4)의 채권 및 시설권리 양도양수각서의 차용금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합137호로 원고가 2013. 3. 10.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도 2015. 11.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서에 의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권 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 및 영업양도

피고는 위 판결에 의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명의자를 변경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8. 8. 31. O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O이 양수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보이는 가게 시설비 5,000만 원을 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O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6, 3, 4, 5호증의 2, 9, 11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공정증서 및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 채무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3. 10.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차용한 금액은 242,296,800원1)

이고,

차용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10%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가 원고가 변제를 지체하자 이자율이 월 30%로 상향되었는데, 그 무렵 적용된 이자제한법의 상한요율은 연 30%이므로, 위 요율을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444,622,108원 중 원고의 차용금액 242,296,8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 요율 연 30%을 적용한 이자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차용금 원본채무에 변제충당 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변제 충당한 결과 피고가 초과하여 변제받은 금원은 90,970,320원이다.

한편 피고가 O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8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인증서의 작성을 강요하여 사실상 원고의 재산을 강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취득한 금원이므로, 피고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90,970,320원과 이 사건 유흥주점 양도대금 80,000,000원을 합한 170,987,323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그 작성을 촉탁하여 촉탁거절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였거나, 실제로는 민법상 위임 유사관계이거나 도급계약에 해당함에도 준소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실질과 형식이 다른 위법한 공정증서에 해당하여 증명력이 없으므로 공정증서의 기재만으로 차용금의 존재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금원은 실질적으로 상법상 익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 피고가 원고에 대한 투자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차용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비용과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나 물품대금 등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유흥주점영업에 투자하였다. 피고는 투자금 회수가 예정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위와 같이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12. 4.까지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합계액 700,000,000원)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3. 12. 5.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피고가 원고의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0.자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합계액 224,500,000원)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현금차용증서에 기한 92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달리 이자약정은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444,622,108원과 2018. 8. 14.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80,000,000원을 924,500,000원의 원본 채무 변제에 충당하면 잔존채무는 399,855,892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존 대여 원금 399,855,89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증인이 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참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대부업자이자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집행증서작성사무처리지침 제4조의 촉탁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증의 1, 3호증의 3,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채무자인 원고와 채권자인 피고가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하여 위 지침에서 정한 촉탁거절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공증인에게 촉탁을 거절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참조), 공증인이 그 작성 촉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작성하였더라도 공정증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실제 계약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경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수하면서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직원 선불금을 포함한 급여 등을 대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4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련된 처분문서는 없지만 인테리어 공사비용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2),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11., 같은 해 12. 4.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3. 12. 4.자 공정증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인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였거나, 피고가 초반에는 일종의 투자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에는 그 때까지 지급한 투자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실제 계약 내용이 위임 또는 도급계약임에도 그와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의 각 취지 참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채무액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은 242,296,8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3. 3.경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수하면서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직원 선불금을 포함한 급여 등을 대납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납한 금원 외에도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출한 금원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②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11., 같은 해 12. 4.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의 채무금액은 실제 원고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대납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점,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 존재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인증서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6억 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인정하는 대납금액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액 242,296,800원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채무액이 700,000,000원보다 적은 242,296,800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에 의한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익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지급한 투자금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대납한 224,500,000원이 투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0. 10. 각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변제기를 정한 이상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금원은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액 700,000,000원 및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에 기한 채무액 224,500,000원의 합계액인 92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기재와 달리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 3. 1.자 공정증서와 2013. 3. 10.자 공정증서가 각 작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3. 20., 같은 해 3. 2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공정증서와 동일한 채무액에 관하여 이자약정 없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 2014. 10. 10. 작성된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상 채무에 대해서도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설령 이 사건 각 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이자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채무자로서 변제한 금원에 대하여 지정변제충당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에서 한 채무지정에 따라 공정증서 및 차용금증서에 기한 채무의 각 원본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변제한 444,622,108원 및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18. 8. 14. 피고가 E 유흥주점을 매각하고 받은 매각대금 80,000,000원³⁾의 합계액 524,622,108원을 원고의 채무 924,500,000원의 원본 변제에 충당하면 잔존채무는 399,877,892원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존 차용금 399,877,8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2014. 10. 10.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였는데, 그와 같이 정산한 이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급여 15,970,000원, 주류대금 345,000원, 유흥주점 월 차임 19,500,000원, 원고의 숙소 월차임 2,882,000원, 전기요금 5,823,140원을 대납하고 원고의 채권자 M에게 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금원의 합계 44,520,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4. 10. 10. 정산 합의 이후 지출한 금원은 유흥주점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급한 추가 투자금이므로 익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영업자의 지위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라면 그와 관련한 비용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 6, 9, 15, 50,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0. 10. 정산합의를 할 무렵 이 사건 유흥주점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2015. 4. 30.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0. 정산합의 무렵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양수인을 찾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2016. 3. 20.이어서 비록 원고가 위 정산합의 무렵 사실상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했다 하더라도 양수인을 구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차임지급의무는 존속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14. 10. 10. 합의 무렵까지 원고가 그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 주류대금 등을 2014. 11.경부터 2015. 경까지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4)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종업원 임금, 주류대금, 차임 등을 대납함으로써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14. 10. 10. 정산합의 이후 지출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당시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양수인을 물색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고가 영업 안정을 꾀하기 위한 재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4. 10. 10. 이후에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52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원, 판사 양지혜, 판사 권종현

[별지1]

순 번	연도	날짜	금액(원)	비고1	비고2
1	2013년	3. 10.	49,000,000		
2		"	20,000,000	권리금명목	E 전 영업주 Q 수령
3		"	30,000,000	보증금명목	임대인 수령
4		3. 28.	29,470,000		
5		4. 2.	470,000		
6		4. 6.	23,720,000		
7		4. 8.	18,000,000		
8		4. 24.	9,500,000		
9		4. 30.	500,000		
10		5. 22.	19,000,000		
11		8. 29.	3,680,000		
12		9. 15.	5,560,000		
13		10. 18.	1,200,000		
14		11. 23.	5,000,000		
15		11. 26.	2,000,000		
	1내지15	합계	218,600,000		
16	2014년	1. 11.	100,000		
17		1. 17.	10,000,000		
18		1. 29.	1,200,000		
19		3. 12.	100,000		
20		3. 19.	1,080,000		
21		4. 29.	8,480,000		
22		5. 1.	50,000		
23		5. 3.	200,000		
24		5. 5.	1,000,000		
25		5. 7.	490,000		
26		5. 12.	335,200		
27		5. 16.	282,800		
28		5. 20.	28,800		
29		5. 21.	50,000		
30		5. 26.	1,606,000		
31		5. 30.	3,000,000		
32		6. 8.	60,000		
33		6. 9.	300,000		
34		6. 12.	4,500,000		
35		6. 18.	382,800		

36		6. 24.	165,000		
37		6. 26.	705,000		
38		6. 27.	850,000		
39		6. 28.	210,000		
40		6. 30.	700,000		
41		7. 1.	2,700,000		
42		7. 7.	500,000		
43		7. 15.	948,000		
44		7. 25.	100,000		
45		7. 27.	100,000		
46		7. 29.	1,395,000		
47		7. 31.	165,000		
48		8. 5.	100,000		
49		8. 8.	1,330,000		
50		8. 11.	300,000		
51		8. 12.	100,000		
52		8. 13.	140,000		
53		8. 18.	200,000		
54		8. 21.	540,000		
55		8. 24.	200,000		
56		8. 29.	100,000		
57		9. 3.	500,000		
58		9. 11.	100,000		
59		9. 16.	165,000		
60		9. 18.	200,000		
61		9. 25.	850,000		
62		11. 11.	100,000		
	16내지62	합계	43,208,600		
63	2018년	4. 11.	300,000		원고가 사용하던 피고 계좌에 피고가 송금
64		6. 1.	200,000		"
65		6. 11.	200,000		"
	63내지66	합계	700,000		
	총 합계		262,508,600		

1) 차용 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소장에서 262,508,6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42,496,800원이라고 주장을 변경하는 등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어느 금액으로 보더라도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비 중 5~6백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원고 자신이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배우자 P이 공사업자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피고의 배우자 P이 진행하고 비용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유흥주점 영업 등 재산권을 강탈한 후 매각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인증서를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득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피고가 수령한 매각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지급한 임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 지급이 정기적이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던 시점에 지급된 임금액과 비교해 다소 소액인 부분도 있는 점에 비추어 밀린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류대금 대납 역시 일회성에 그치고 금액도 345,000원으로 소액이다.